우정사업본부 일반통상 우편요금 원가정보

1. 총괄표

(단위 : 억 원)

항 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중(%)
Ⅰ. 총괄원가(1+2)	12,798	11,637	13,386	12,401	13,532	13,281	100.00
1. 적정원가(①+②-③)	11,642	10,928	12,576	11,860	13,204	12,871	96.91
① 영업비용	11,642	11,281	12,808	12,258	12,576	13,281	100.00
㉠ 재료비	548	503	265	183	183	213	1.60
㉡ 인건비	6,923	7,142	8,453	7,851	8,013	8,973	67.56
㉢ 판매비와 관리비	2,834	2,411	957	900	932	734	5.53
- 판매비	1,195	1,241	101	64	58	61	0.46
- 관리비	1,639	1,170	856	836	874	673	5.07
㉣ 기타 경비	1,337	1,225	3,133	3,324	3,448	3,361	25.31
- 감가상각비	873	803	621	908	640	611	4.60
- 공공요금	214	211	130	137	116	181	1.36
- 수선유지비 등	250	211	2,382	2,279	2,692	2,569	19.34
② 영업외비용(*)		83	169	188	1,258	49	0.37
③ 영업외수익(*)		(436)	(401)	(586)	(630)	(459)	(3.46)
2. 적정투자보수(①×②)	1,156	709	810	541	328	410	3.09
① 요금기저	36,931	25,428	31,238	30,076	22,746	22,744	
② 적정투자보수율	3.13%	2.79%	2.59%	1.80%	1.44%	1.80%	
Ⅱ. 총수입	11,379	11,084	11,598	10,566	10,408	10,384	
1.수요량(백만통)	4,170	3,920	3,782	3,533	3,378	3,186	
2.적용단가(원/통)	273	283	307	299	308	326	

(*) 우편요금산정규정 개정(2013.12.)에 따라 '14년도부터 **적정원가에 영업외수익·비용 포함**

※ 당해연도 원가정보는 **직전연도 결산금액 기준**으로 산출

2. 원가정보 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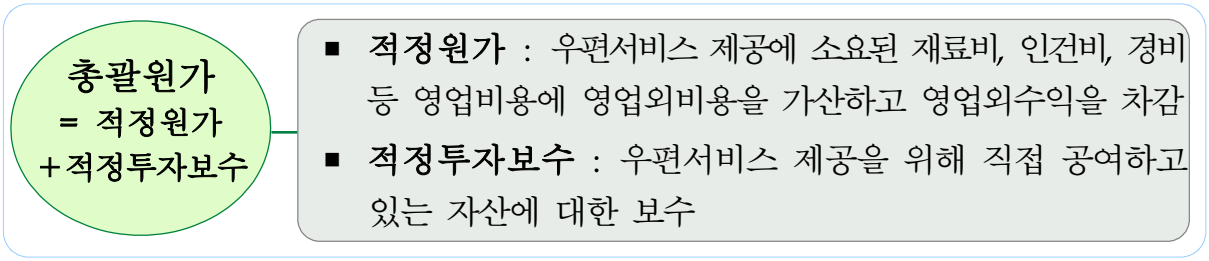
1) 공공요금 원가정보의 공개배경

가.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여 공공요금의 안정화 도모

나. 공공요금의 산정방식, 결정체계 등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으로 공공요금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요금에 대한 이해 증진

2) 일반통상 우편요금 산정방식

가. 일반통상(소포 및 등기우편을 제외한 우편물로 취급과정이 기록되지 않음) 우편요금은 우편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와 우편사업에 직접 공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 수준에서 결정



나. 산정근거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공요금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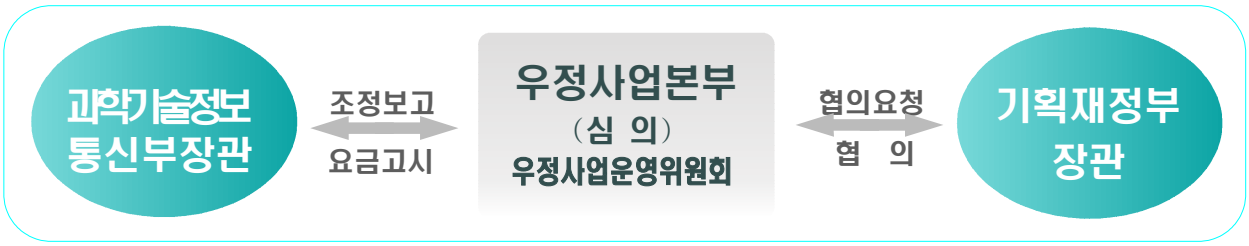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우편요금산정규정」

3) 일반통상 우편요금의 결정체계

가. 우정사업본부에서 매년 일반통상 우편서비스 원가를 산정하며, 요금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서 우편요금 조정에 관하여 심의

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요금조정에 관하여 협의

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우편요금 조정고시를 통하여 시행



4) 원가항목별 세부 산정 기준

Ⅰ. 총괄원가

1. 적정원가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영업외수익

① 영업비용

㉠ **(재료비)** 일반통상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직원 피복비, 소모품비, 인쇄비 등

㉡ **(인건비)** 일반통상우편물의 접수, 발송·도착, 운송, 배달 및 지원·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급여, 제수당 등의 합계액

㉢ **(판매비와 관리비)** 일반통상 우편서비스를 위한 관리·지원활동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해 간접적으로 발생한 비용

- **(판매비)** 일반통상우편 매출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광고선전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 **(관리비)** 일반통상우편을 지원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 및 직할관서 등에서 발생하는 복리후생비, 임차료 등 제반 경비

㉣ 기타 경비

- (감가상각비) 일반통상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투입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내용연수 기간 균등하게 상각(정액법)
- (공공요금) 일반통상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체국 등에서 사용하는 공공요금
- (수선유지비 등) 상기 원가항목을 제외한 일반통상우편 시설의 수선유지비 등 기타 경비의 합계

② (영업외비용) 자산처분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우편영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 중 일반통상우편으로 배부된 비용

③ (영업외수익) 임대수익, 자산처분이익 등 우편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익 중 일반통상우편으로 배부된 수익

2. 적정투자보수 : 요금기저 × 적정투자보수율

① (요금기저) 일반통상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공여하고 있는 유·무형 자산, 운전자본, 건설중인자산의 합계에서 자산재평가차액을 제거

② (적정투자보수율) 3년 만기 국고채의 평균 유통수익률

Ⅱ. 총수입

1. (수 요 량) 우편물통계보고서상의 일반통상우편물 접수물량

2. (적용단가) 일반통상우편 총수익을 접수물량으로 나눈 평균 단가

3. 작성자

가. 작성자 :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김세웅 사무관 (☎ 044-200-8221)

나. 감독자 :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장 신대섭(☎ 044-200-8210)

다. 확인자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代 신대섭(☎ 044-200-8200)

※ 외부기관 검증 : 대주회계법인(☎ 02-568-7683~4)